



백양골 소식

2018년
11월

■ 제 485호 ■

발행인:장성군수/편집인:총무과장/제작:총무과/☎ 390-7231/FAX 390-7579/jangseong.go.kr/2018.11.26.(월)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정치후원금 기부 필요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이와 관련하여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려면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http://www.give.go.kr)에 접속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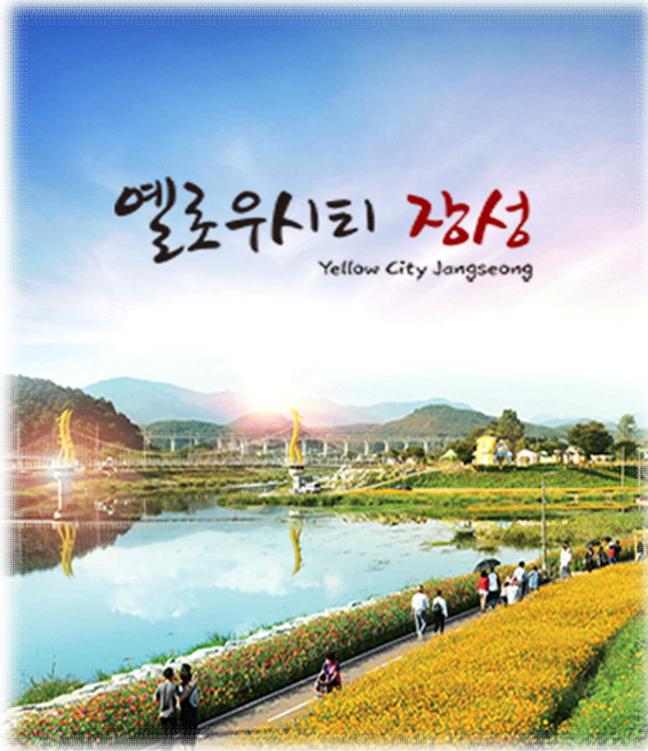


- ※ 정치후원금의 종류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으며,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 가능)
- ※ 결제수단 :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 ※ 포인트 기부 가능 카드사 : KB국민, 비씨, NH채움,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우리(BC TOP포인트 전환 후 이용 가능) 또한 신한카드는 신한아름인(arumin.shinhancard.com)에서, 롯데카드는 롯데카드홈페이지(www.lottecard.co.kr)에서도 포인트 기부가 가능합니다.
- ※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

연말정산 세제 혜택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의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후원하고 연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1석2조입니다.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 받으세요



[일반행정 소식] ————— 3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2.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3.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
4. 내 집·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6.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산불예방 안내
7.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8.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

[보건·복지 소식] ————— 11

1.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 안내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4.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비용 지원
5. 치매예방관리사업 안내
6. 국가암관리사업

[농·축산 소식] ————— 17

1. 농약허용기준강화(PLS) 바로알기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국·도정 소식] ————— 19

1. 보건복지상담, 이젠 ‘카카오톡’으로도
하세요
2.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소
벤처기업부의 노력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 정 의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자체 공무원
- 역 할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주요업무 :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대변
- 처리업무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 진행 중인 사항 등

□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안내

구 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 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신청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접수처	장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 상세내용은 군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참조 [뉴스소식⇒장성소식⇒공지사항]

문의처 ☎ 390-7217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당신의 나눔이 이웃의 생명이 됩니다.”

적십자회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 시 이재민 구호나 사업실패, 실직, 질병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 등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 집중모금기간 : 2018. 12. 1. ~ 2019. 1. 31.

※ 2019년 적십자회비모금이 12월부터 시작됩니다!

○ 참여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

○ 납부방법

- 지로(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편의점, 스마트폰, 집전화 등

○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국세청연말간소화서비스이용)

- 법 인 : 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세법상 비용인정

문의처 ☎ 390-7239 (총무과 대외협력담당)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

□ 감면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 지원대상

- 법령에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적용한 건축물

□ 지원범위

-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2층 미만 또는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건축물에 내진보강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경우(신규 건축물 내진보강)
 - ☞ 지방세 감면 : 취득세 100분 50 경감
재산세(5년간) 100분 50 경감
- 건축당시 건축법상 내진보강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의 민간건축물에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대수선,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 ☞ 지방세 감면 : 취득세 100분 100 경감
재산세(5년간) 100분 100 경감

□ 지원기한 : 2018. 12. 31.까지[한시적 시행]

□ 신청절차

- 내진보강지원신청서(내진성능확인서) 작성 후 재무과에 제출

문의처 ☎ 390-7473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내 집 · 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내집 ·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이 10cm이상일 때는 24시간 이내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
-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



문의처 ☎ 390-7447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또는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를 포함한 가구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18. 10월 이후)를 지원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2018년 등유나눔카드 및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지원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전액 국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는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요금 차감) 중 택일

□ 신청 및 사용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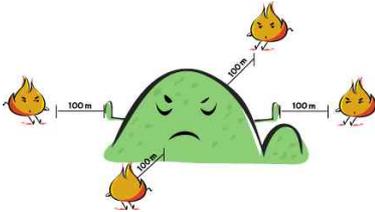
- 신청기간 : 2018. 10. 17. ~ 2019. 01. 31.
- 사용기간 : 2018. 11. 08. ~ 2019. 05. 31.
 - 가상카드는 2018년 11월 8일부터 2019년 5월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자격변동·사용방식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거주지 읍·면에 사전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문의처 ☎ 390-7237 (교통정책과 에너지담당)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15.) 산불예방 안내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낮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영농부산물은 일정장소에 모아두었다가 퇴비로 활용**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 매년 120여건의 소각산불 발생(산불 원인의 31% 차지)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54명 사상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 사망(39명)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
- ※ 산불로 확산될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절대 혼자 진화하면 안됨



- 산불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농사를 위한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 390-7425 (산림편백과 산림보호담당)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화

- 자전거 사고로부터 이용자의 머리손상을 줄이기 위해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18.3.27.), 시행('18.9.28.)

자전거탈때 안전모를 착용하면

머리상해치 최대

92%
감소



중상가능성 최대

80%
감소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선택 아닌
‘기본’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2017)]

안전모 쓸 때는 ‘2-4-1 법칙’ 을 기억하세요!

자전거 안전모
쓸 때는
‘2-4-1 법칙’
기억하기

2



4



1



- 안전모와 눈썹 사이의 간격은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필요
- 귀 아래에서 집게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만들었을 때, 안전모의 끈이 포개지도록 할 것
- 턱과 안전모 끈의 간격은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으로 남겨두기

꼭 기억하세요! “자동차는 안전벨트, 자전거는 안전모”

문의처 ☎ 390-7471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수도계량기 동파[凍破] 예방 안내

□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여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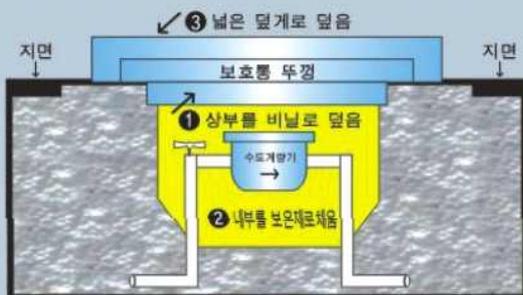
-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되므로
- 미리미리 수도 계량기함을 보온하여 불편 없는 겨울을 보내세요.

□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 계량기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
- 계량기통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한다.

계량기보호함 보온 방법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벽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 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열손상(고장)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390-8566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도담당)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지원대상

-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단, 주거 또는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개편기준

- 2019년 1월부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생계·의료급여 적용)
 -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생계급여만 적용)
 -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 수급가구(생계급여만 적용)

□ 지원내용

급여종류	2019년도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	138만원	생활비 지원(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의료	185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203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231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신 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상 담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390-7307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 안내

□ 무료법률지원 확대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8. 1. 1.부터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

□ 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
※ 수급자는 당연히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

□ 지원내용

- 법률상담
 - 모든 법률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구조(예시)
 -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민사사건
 - 이혼, 양육, 친생자, 입양, 인지, 친권, 상속 등 가사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사건

□ 소송구조 신청시 필요서류

-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2018년 기준가구 월소득 226만원 이하)

□ 문의 및 신청방법

- 전화상담 : ☎ 국번없이 132(132 누른 후 0번 선택), 대표전화 054)810-0132
- 방문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광주지부 : 61441)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3, 2층(062-224-7806)
- 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문의처 ☎ 390-7313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시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행위시 **과태료 50만원** (진입로 방해, 물건 놓는 행위 등)
-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 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

문의처 ☎ 390-7311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비용 지원

□ 지원목적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및 전남의 인구증가 도모

□ 지원사업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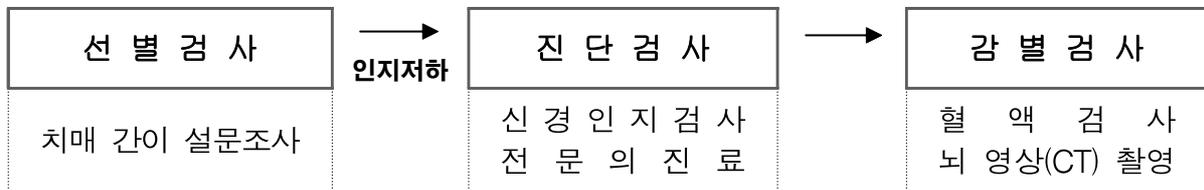
- 지원내용 : 1인당 300,000원
 - ※ 근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 지원대상 : 2016. 6. 1.이후 국적취득자와 배우자가 국적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방법 :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입금
- 신청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 제외 대상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 제9호 해당되는 수수료
 -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이 면제되는 경우
 - 기타 유사·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 신청 시 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통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수수료 납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390-7319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담당)

치매예방관리사업 안내

□ 치매조기검진사업 전수조사 실시

- 기 간 : 2018. 1. ~ 12.
- 대 상 : 만 60세 이상 관내주민
- 장 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관·단체, 경로당 등
- 조사기관 : 장성군 보건소
- 조사내용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 「팔팔한 뇌 청춘」 치매예방교실 운영 안내

- 기 간 : 2018. 5. ~ 12. / 매주 금요일 14:00 ~ 16:00
- 대 상 : 20명(치매에 관심 있는 관내주민)
- 장 소 : 보건소 2층 프로그램실
- 내 용 : 치매예방교육, 음악요법, 공예요법, 숲 체험, 치매예방체조 등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안내

- 기 간 : 2018. 1. ~ 12.
- 대 상 : 관내 거주하는 치매 등록된 사람
- 내 용
 - 영양제, 기저귀, 물티슈 중 1개 선택 / 월 1회 제공
 - 방수매트 / 1회 제공
- 방 법 :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 방문 수령

문의처 ☎ 390-8317 (보건소 치매예방담당)

국 가 암 관 리 사 업

□ 사업개요

-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 짝수년도 출생자
- 기 관 : 장성병원, 혜원병원, 중앙내과, 기독의원 등 검진지정 병·의원
- 내 용

구 분	대 상 자	검진주기	검사항목	비 고
위 암	만40세 이상	2년	위장조영검사 및 위내시경검사	짝수년도 출생자
유 방 암	만40세 이상	2년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
대 장 암	만50세 이상	1년	대 변 검 사	검사결과 양성소견자 대장내시경 검사
간 암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혈액검사	고위험군

※ 무료 암검진을 받으면 암 확진 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문의처 ☎ 390-8341 (장성군 보건소)

농약허용기준강화(PLS) 바로알기



농약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농약허용기준 강화(PLS)란?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에는 0.01ppm이 적용됩니다.

기준 강화가 왜 필요한가요?

- 안전하지 않은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민건강과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전품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것만 지켜주세요!

- 1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 2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 3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 4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 5 출처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농약관리법 제23조]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점!

농약 사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규제물질 목록화제도(NLS) 적용, 규제물질 이외의 농약은 사용 가능

허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

전 > 후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잔류허용기준 이하면 적합
잔류허용 기준 미설정 농산물은 코엑스, 유사농산물 적용 기준 적용

작물별 잔류허용기준 이하면 적합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산물은 0.01ppm 이하만 적합

전 > 후



제가 사용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까 불안해요!

토양에 잔류하거나, 후작물에 전이되는 농약을 인체에 무해한 수준에서 허용하고, 항공방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8년 이전에 수확해서 '19년에 유통되는 농산물에도 적용되나요?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됩니다.



궁금합니다!

Q 일률기준 0.01ppm은 어느 정도의 양인가요?

A 0.01ppm은 불검출 수준을 의미합니다.

Q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A 과일, 채소 등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이번 보완대책으로 부적합 농산물의 급증을 막을 수 있나요?

A 현장에서 필요한 농약을 충분히 등록함으로써 일률기준(0.01ppm)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폭 감소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Q 등록 농약이 늘고 있으나, 추가로 농약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Q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여 0.01ppm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관련법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회수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 390-8469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유통담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금농장시 차단방역 수칙

- ① 농장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통제
- ②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③ 농장 출입 전·후 소독(특히 손, 신발) 및 환복
- ④ 사료변 주변 사료 즉시 제거, 주기적 소독 실시
- ⑤ 쥐 야생조류 등 침입 방지용 헨스, 그물망 설치
- ⑥ 축사 출입 전 환복, 신발 교체를 위한 전실 설치, 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 ⑦ 축사 내·외부 및 장비 등 철저히 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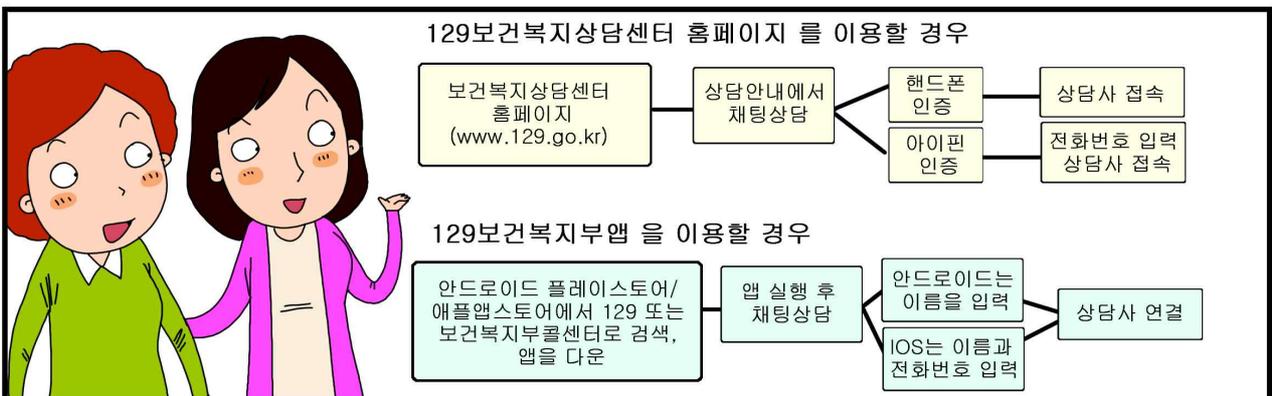
야생조류 우리 농장에 가까이 못오게 하세요!

※ 야생조류 차단방역 수칙이란? 야생조류에 의해 시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방안입니다.

- 1 야생조류의 접근과 철새분변과의 접촉을 차단하면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 축주, 가족, 농장 종사자도 외출 후, 귀가 시 신발과 의복을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 3 철새 서식지나 도래지 주변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농장주변 하천·논·밭 등)
- 4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주변을 청소하여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 5 축사 주변의 야생조류 분변을 관찰하고, 발견 시 수거 소각하고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문의처 ☎ 390-8518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담당)

보건복지 상담, 이전 '카카오톡' 으로도 하세요.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 ☎ 044-202-2038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

